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70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이재정・김한규・강선우

강유정 · 임호선 · 위성락

박홍배 · 장철민 · 강훈식

복기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간 협의로 가능함.

그러나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폐지 결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까지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 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제기됨. 일례로 출국납부금 중 하나인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가 결정됨.

이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제2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부담금을 신설·폐지하려는 경우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제출과는 별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	제6조의2(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
의 국회제출 등) ① (생 략)	의 국회제출 등) ① (현행과 같
	<u> </u>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	②
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	
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	
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	
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	
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u><단서</u>	
<u>신설></u>	부담금을 신설ㆍ폐지하려는 경
	우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
	관의 장은 부담금운용종합계획
	서 제출과는 별도로 국회 소관
	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